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한국산업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2. 7. 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 원	주의 16명, 퇴직자 위법사실('주의' 수준) 통지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주의사항

(1)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·관리 의무 위반

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

□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'「금융실명법」'이라 함)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,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(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)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, 사용 목적,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

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,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·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,

○ 한국산업은행 ◇◇◇◇◇부 등은 2015.4.13.~2020.4.3. 기간 중 법원,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미통보(◎건) 또는 지연통보(@@건)하거나,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(△△건)한 사실이 있음(총 ☆☆☆건 위반)

②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·관리 의무 위반

□ 「금융실명법」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, 사용 목적, 제공자 및 제공일,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, 제공의 법적 근거,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,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, 사유, 기간 및 횟수 등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하는데도

○ 한국산업은행 ◇◇◇◇◇부 등은 2015.5.26.~2021.6.28. 기간 중 사용 목적, 제공의 법적 근거,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,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사유 등을 누락(♧♧건)하거나 요구자에

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일을 실제로 제공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입(◈건)하여 기록·관리한 사실이 있음(총 ♠♠건 위반)

< 관련 규정 >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